

1. 개정이유

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도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모 및 예우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, 법에서 위임한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

2. 주요내용

가. 장기등기증자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(제26조의2)

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실시 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추가

나.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
(제26조의3)

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에 대한 대상 선정, 범위 기준,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의 “국가가”를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”로 개정한다

제26조의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3(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자의 서신교환 등 교류활동)

① 서신 교환 등 교류대상은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으로 한다.

②서신 교환 등 교류대상의 장기등기증자 유족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배우자

2. 직계비속

3. 직계존속

4. 형제자매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는 4촌이내의 친족

③서신 교환 등 교류 활동은 우편물을 통한 서면 서신 교환,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서신 교환 등을 할 수 있다.

④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서신 교환 등 교류 활동 시 익명성 보장 등을 위해 이름,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표시, 금전적인 요구,

만남 시도, 기타 정보를 결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을 위해 수행기관을 운영하고, 수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6조의2(장기등기증자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)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<u>국가</u> 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 (생략)	제26조의2(장기등기증자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) ----- ----- <u>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<u>〈신 설〉</u>	제26조의3(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) ① 서신 교환 등 교류대상은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으로 한다. ②서신 교환 등 교류대상의 장기등기증자 유족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배우자 2. 직계비속 3. 직계존속 4. 형제자매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는 4촌 이내의 친족 ③서신 교환 등 교류 활동은 우편물을 통한 서면 서신 교환,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서신 교환 등을 할 수 있다.

	④ <u>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서신 교환 등 교류 활동시 익명성 보장 등을 위해 이름,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표시, 금전적인 요구, 만남 시도, 기타 정보를 결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⑤ <u>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 받은 사람의 서신 교환 등 교류 활동 지원을 위해 수행기관을 운영하고, 수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</u>
--	--